



국가인권위원회공보

국가인권위원회

2022년 4월 15일

제 20권 제 2호

알 립

- 국가인권위원회공보는 당사자(진정인, 피해자, 피진정인) 및 관계인의 인격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들의 이름, 소속기관, 주소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고,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.
- 현재까지 발간된 공보는 그 전문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humanrights.go.kr>)에 게재되고 있으므로,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목 차 -

공 지 사 항

1	인사발령 등	248
2	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	251
3	진정접수 · 상담 · 민원 · 안내 처리 현황	254
4	진정사건 처리 현황	256

법령·정책 등 권고결정 및 의견표명

1 2022. 1. 19.자 결정 21진정0153400 【경찰공무원 신체기준에서 교정청력자 차별】 365

경찰청장에게, 교정청력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「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의 ‘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표’에서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
2 2022. 2. 16.자 결정 21진정0697700 【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강제입원】 274

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위기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,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
3 2022. 2. 16.자 결정 22진정0106200 【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의견표명】 290

- 【1】**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,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소투표 안내 미흡으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사전투표 또는 당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원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, 거소투표 시 대리투표 등 투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- 【2】**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선거권은 「헌법」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나,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외출불허 및 방역 등의 사유로 입원환자들의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과,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 입원한 환자가 사전투표 또는 당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각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

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

1 2021. 12. 28.자 결정 21진정0305900 【경찰청의 백신접종 강제 및 부당한 개인

정보 취합] 297

경찰청장에게,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이 사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하기를 권고

2 2021. 12. 28.자 결정 21진정0179600 【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속옷차림 연행 등] 310

○○○○○경찰서장에게,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체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를 권고

3 2022. 1. 26.자 결정 20진정0877600 【피의자 사진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] 323

경찰청장에게,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할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그 목적과 용도를 고지하고,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거나 동의서를 받는 등 사진 촬영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

4 2022. 1. 26.자 결정 21진정093900 【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이유로 한 교육생 외출 및 외박 금지] 333

피진정인에게,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의 외출 및 외박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
5 2022. 2. 11.자 결정 21진정00285000 【교도소의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] 344

- 【1】** 법무부장관에게, 여성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이 완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
- 【2】** ○○교도소장에게,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성인지 감수성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6 2022. 2. 11.자 결정 21진정0359700 【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] 359

법무부장관에게,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을 권고

- 7** 2022. 2. 11.자 결정 21진정1003000 【국가기관의 증명서 발급 시 과도한 개인 정보 표기】 367
국가보훈처장에게,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에 ‘자녀’ 라는 표기 대신 ‘양자’, ‘친양자’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표기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
- 8** 2022. 2. 11.자 결정 20진정0181300 【교원인사기록카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】 376
교육부장관에게,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하지 않도록 「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[별지 제1호서식]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
- 9** 2022. 2. 23.자 결정 21진정0351700 【경찰의 조사 진행 중 과도한 수갑 사용】 388
○○○○경찰서장에게, 피진정인 2를 포함한 형사와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,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기를 권고
- 10** 2022. 2. 23.자 결정 20진정0266100 【지명수배자 검거 시의 적법절차 위반】 388
○○○○경찰서장에게,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형집행장에 따른 지명수배자 검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

차별행위 조사결정

- 1** 2022. 2. 24.자 결정 20진정0133000 【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원로가산금 지급 차별】 415
교육부장관에게, 원로가산금 지급기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

- 2** 2022. 2. 24.자 결정 20진정0199200 【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】 425
○○○○○○연구소장에게, 진정인에 대한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, 신원 특이자에 관한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
- 3** 2022. 3. 8.자 결정 21진정0265800 【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채용 시 거주지 제한】 431
○○○○○○재단 이사장에게, 향후 채용공고 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

인권도서관 신착자료

- 1** 국내서 단행본 438